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9년 6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4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 6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941,261천원으로서, 이중 10건에 2,341,956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

- | | |
|----------------------------|--------------|
| ○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 85,331천원 |
| ○ 5.16~5.18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 1,333,406천원 |
| ○ 사과화상병 발생에 따른 방제약품비 | 21,670천원 |
| ○ 사과화상병 발생에 따른 수목 제거비 | 12,390천원 |
| ○ 폭염장기화에 따른 폭염대책 지원 | 230,625천원 |
| ○ 가뭄장기화에 따른 관수시설 지원 | 253,000천원 |
| ○ 가뭄장기화에 따른 관수시설 지원(도비매칭분) | 60,000천원 |
| ○ 평창운수(주) 노조과업에 따른 대체버스 운영 | 9,450천원 |
| ○ 중증장애인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예산 부족분 | 168,000천원 |
| ○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 168,084천원 임. |

2018년도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2,000천원으로서, 이중 1건에 100,000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

-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결과 반영 및 민간위탁용역 변동비 증가분 보전 100,000천원 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의 지출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1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941,261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에 2,341,956천원이 지출결정되었고, 그 중 2,301,476천원이 지출되고 23,600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6,880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08,690천원으로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결과 반영 및 민간위탁용역 변동비 증가분 보전을 위해 100,00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예비비 편성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8년도 예비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 ▶ 예비비 지출은 대부분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및 가뭄장기화에 따른 지원 등 예측하지 못한 재난발생과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 ▶ 중증장애인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부족분 168,000천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보조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수요예측이 가능함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예측 가능한 소요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